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박석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296

발 의 년 월 일 : 2023년 10월 11일
발 의 자 : 박 석 의원(1명)
찬 성 자 : 김원중, 김종길, 김지향, 문성호, 박춘선, 신동원, 신복자, 옥재은, 윤영희, 윤종복, 이민석, 이병윤, 이봉준, 이승복, 이종배, 장태용, 황철규 의원(17명)

1. 제안이유

○ 「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」는 한강의 자연성을 존중하면서 접근성 강화, 매력도 증진, 도시활력 제고를 통해 한강 중심으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하여 공사의 참여가 필요한 사업임.

○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근거 법령인 본 조례의 공사 사업범위에는 토지 및 주택 개발 등으로 명시되어 있고 한강수상 및 수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조례 개정으로 사업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.

○ 특히, 한강 리버버스 사업의 경우「유선 및 도선사업법」상 도선사업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공사 사업 참여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에 “한강 수상 및 수변 개발에 따른 건설 및 운영·관리사업”을 추가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공기업법」, 「관광진흥법」 및 「유선 및 도선사업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1항제22호를 제23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2. 한강 수상 및 수변 개발에 따른 건설 및 운영·관리사업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1조(사업)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 1. ~ 21. (생 략) <신 설> 22. (생 략) ② (생 략)	제21조(사업) ① ---------- ----------. 1. ~ 21. (현행과 같음) 22. 한강 수상 및 수변 개발에 따른 건설 및 운영·관리사업 23. (현행 제22호와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
문서번호	2023101100000018

비 대 상 사 유 서

요 청 인 : 박 석 의원	담 당 : 오희선 과장 이정수 팀장 박지영 주무관
접 수 일 : 2023.10.11.	
회 신 일 : 2023.10.13.	내용문의 : 02-2180-7952

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

목 차

1. 판단 근거

2. 작성자

서울특별시의회 사 무 처 재정분석담당관
Seoul Metropolitan Council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1조(사업)제1항제22호에 ‘한강 수상 및 수변 개발에 따른 건설 및 운영 관리사업’을 신설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한강수상 및 수변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 오희선
추계세제팀장 이정수
주 무 관 박지영
☏ 02-2180-7952
e-mail : 7magic7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시 첨부하지 않는 자료입니다.